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 경 위

- 발 의 자 : 김춘곤 의원
- 의안번호 : 제1324호
- 발의일자 : 2023년 10월 13일
-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3일

2. 제 안 이 유

- 2023년 6월 5일 '국가보훈처'가 '국가보훈부'로 승격되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적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'국가보훈처장'을 '국가보훈부장관'으로 개정함(안 제20조제1항제6호)
- 나.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으로 개정함(안 제20조제1항제11호)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‘국가보훈처’가 ‘국가보훈부’로 승격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정부조직법」 개정¹⁾으로 ‘국가보훈처’가 ‘국가보훈부’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반영하는 것으로,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음.
- 그 밖에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명이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,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1) [법률 제19228호, 2023. 3. 4, 일부개정] [시행 2023. 6. 5]